

2025

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법령2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PDF 전자책
- ✦ 고난도 문제 대비, 고득점용
- ✦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✦ 3시간 50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법령2

ISBN : 979-11-94286-86-8

발간일 : 2025-03-05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7,500원



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법령2

[목차]

제1편 화재예방법(p3)

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(p57)

제3편 다중이용업소법(p149~200)

[약어]

부령은 국토교통부령

청장은 소방청장

본부장은 소방본부장

서장은 소방서장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 내용

제1편 화재예방법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기본계획(p9)

제3장 화재안전조사(p12)

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(p17)

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(p26)

제6장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(p45)

제7장 보칙(p53)

제8장 벌칙(p56)

[약어]

대상물은 소방대상물

특정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

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기본계획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

진단기관은 안전진단기관

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

관리자등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

기술사는 소방기술사

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화재 예방, 안전관리

- 국민 보호, 공공 안전/복리 증진

2. 정의

가. 예방

- 화재위험에서 국민보호
- 화재발생 사전 제거, 방지 위한 모든 활동

나. 안전관리

-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/대비/대응

다. 화재안전조사(이하 안전조사)

- 대상물, 관계지역, 관계인에 대해
- 시설등 적법 설치/관리 여부,
- 화재 발생 위험성 등 확인을 위해
- 관서장이 현장조사, 문서열람, 보고요구

라. 화재예방강화지구

- 화재 우려가 크거나 화재시 큰 피해 예상
- 시도지사가 지정해 예방/안전관리 강화

마. 화재예방안전진단(이하 안전진단)

- 화재시 사회/경제적 피해 큰 대상물의
- 화재위험요인 조사, 위험성 평가, 개선대책 수립

바. 기타
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(이하 관리대상물)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상 특정소방대상물

3. 책무

- 국가는 화재예방정책 수립/시행
- 지자체는 이에 맞게 지역 화재예방정책 수립/시행
- 관계인은 국가등에 적극 협조

4. 위원회

[약어]

- 조사위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
- 심의회는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

가. 구성

1) 조사위

가) 관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구성 가능

- 위원장 1명 포함 7명내로 성별 고려해 구성

나) 관서장이 위원장

다) 위원은 다음 중 관서장이 임명/위촉

- 소방공무원(과장 이상)
- 기술사, 관리사
- 소방 석사 이상
- 소방 법인/단체 종사, 교육/연구 5년 이상

2) 심의회

가) 청장이 12명내 구성/운영 가능

나) 위원

a) 법령/정책 담당

- 행안부, 산업부, 보건부, 노동부, 국토부, 안전 관련 중앙기관장이 고공단 중 각 1명
지명

- 소방청 화재안전 소방준감 이상 중 청장 지명자

b) 청장 위촉 전문가

- 기술사

- 안전원, 기술원, 화재보험협회, 가스/전기 안전공사 화재안전업무자 중 기관장
추천자

- 전문대 이상,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

다) 위원장

- 위원 중 호선

- 심의회 대표, 업무 총괄

- 위원장 지명 위원이 대행

3) 공통

- 위촉위원은 임기 2년, 1회만 연임

나. 조사위 위원 제척 등

1) 제척

- 심의/의결에서 다음 위원 제척

a) 위원, 전/현 배우자/친족이 대상물과 직접 이해관계

- 대상물 관계인이거나 관계인과 공동 권리자나 의무자

- 대상물 설계, 공사, 감리, 자체점검

- 대상물 화재안전조사

b) 위원이나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내 재직했던 기업이

- 대상물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 포함), 감정, 조사

2) 기피

- 당사자는 제척사유 있거나 위원에 공정한 심의/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면
위원회에 기피 신청

-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

-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참여못함

3) 회피

- 위원이 제척/기피 사유에 해당시 스스로 안건 회피 요

다. 해임/해촉

1) 조사위는 **관**서장, **심**의회는 **청**장이 해임/해촉

2) 사유는

- 심신장애로 직무 불가

- 직무 관련 비위

-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

-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 의사표명

- 조사위는 이외 제척사유에도 회피안한 때 해임/해촉

라. 기타

1) 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 둘 수 있다

2) 조사위, 심의회, 전문위 출석 위원, 전문위원에 예산내 수당, 여비, 경비 지급 가능

- 예외)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해 출석시

3) 운영세칙은 청장이 정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기본계획

4~6조

1. 수립/시행

가. 기본계획

1) 청장이 5년마다 수립/시행

- 8월31일까지 중앙기관장과 협의

- 9월30일까지 수립

2) 내용

- 정책 목표/방향

- 법령/제도 기반 조성

- 대국민 교육/홍보

- 기술 개발/보급

- 전문인력 육성/지원/관리

- 관련 산업 국제경쟁력 향상
- 화재발생 현황
- 화재예방정책 여건 변화
- 소방시설 설치/관리, 화재안전기준 개선
- 계절별/시기별/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
- 청장 인정 사항

나. 시행계획

1) 청장

-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/시행
- 중앙기관장/시도지사에게
- 10월31일까지 기본계획/시행계획 통보
- 자료 제출 요청 가능

2) 내용

-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
- 청장 인정 사항

다. 세부시행계획

1) 중앙기관장/시도지사는

- 12월31일까지 세부시행계획 수립
- 청장에 수립/시행결과 통보

2) 내용

- 세부 집행계획

- 직전 세부시행계획 시행 결과
- 중앙기관장/시도지사 결정 사항

2. 청장의 실태조사

가. 개요

- 대상물 용도/규모, 화재예방/안전관리, 소방시설 설치/관리 현황 등 조사 가능
- 중앙기관장 요청시 합동 조사 가능
- 중앙기관장, 지자체장, 공공기관장, 관계인 등에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자료 요청 가능

나. 방법

- 통계/문헌/현장 조사
- 정보통신망/전자적 방식 가능

다. 절차

- 조사 7일 전 대상자에 조사계획 통보
- 출입시 증표 제시
- 전문기관/전문가에 의뢰 가능
- 조사 결과 공표 가능

3. 청장의 통계 작성/관리

가. 매년 작성/관리 의무

- 업무 전부/일부를 안전원, 정부출연연구기관,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수행 가능
- 전산시스템 구축/운영, 빅데이터 활용 가능

나. 항목

- 1) 현황/안전관리
 - 대상물, 다중이용업, 제조소, 화재예방강화지구
- 2) 소방시설등 설치/관리
- 3) 화재예방 활동
 - 화재발생 이력, 안전조사 등
- 4) 실태조사 결과
- 5) 지역별/성별/연령별 현황
 - 어린이/노인/장애인 등 취약자 지원
 - 안전관리자 자격증발급/선임
 - 소방시설업자, 소방기술자, 소방시설관리업 등록
- 6) 안전진단 대상/결과
- 7) 청장 인정 사항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3장 화재안전조사

7~16조

1. 관서장의 안전조사

가. 다음 경우 조사 가능

- 단, 실제 주거 개인 주거는 승낙시, 긴급시에 한정
- 자체점검/안전진단 불성실/불완전